

# 기술보증기금 2006 벤처 지원계획

벤처기업 보증지원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(이하 기보)이 2006년도 보증운용계획과 주요 지원제도를 발표했다. 올해 '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이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, 이와 관련한 기보의 지원제도를 소개한다.

## 기술보증기금 2006년도 세부 보증공급 계획

### □ 2006년 보증공급 규모는 10조원

- 벤처·Inno-Biz·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보증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
  - 고액·장기이용·한계기업의 보증감축 재원을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신규보증 재원으로 활용
- ※신규보증 : (2005) 1.5조원 → (2006) 2조원

### □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

- 벤처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조원 수준의 보증공급
  - ※지원계획 : (2005) 2.5조 → (2006) 3.7조 → (2007) 4조
- 성장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보증연계투자 실시
  - ※지원계획 : (2006) 100억원

### □ 기술평가보증 확대

- 기술평가보증을 전략보증으로 육성하여 2009년까지 기술평가보증을 총보증잔액의 60% 수준으로 확대
  - ※연차별 확대계획(%) : (2005) 22.1 → (2006) 27.8 → (2007) 37.5 → (2008) 47.2 → (2009) 60
- One-stop보증을 정책자금지원 표준모델로 정착시켜, 창업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의 One-stop집행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
  - ※(2005년 실적) 2414억원 → (2006) 4000억원

## 기술평가보증 제도

### □ 제도개요

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·Inno-Biz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 기술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하는 제도

### □ 대상기업 및 대상자금

- 정책자금 One-stop 지원보증
  - 정책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선정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가능 여부와 지

원금액을 One-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위탁관리기관 및 용자취급기관에서는 기보의 기술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상품	대상기업
중소·벤처기업 창업자금 (중소기업청)	- 창업준비 중인 자 -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(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(과학기술부)	-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 - 미래유망기술분야 및 신기술분야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 및 후속 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
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(정보통신부)	- 유·무선통신, SAW 및 컨텐츠,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
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(문화관광부)	-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, 문화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영위기업
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(중소기업청)	- 아래 해당 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정부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· Inno-Biz기업 보유기술 · 특허 또는 실용신안, 이전받은 기술 · 구조고도화사업(중진공) 및 기술지도(중기청) 참여업체의 보유기술
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(지방자치단체)	- 벤처기업, 자자체가 평가요청한 기업
구조개선자금중 구조개선사업 (중소기업청)	-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

### ○ 정책자금 One-stop 지원보증

상품	대상기업
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(금융기관)	- 설립 후 3년 미만(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기술개발공동지원보증 (금융기관)	- 산업피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
INNO-BIZ 보증 (금융기관)	- INNO-Biz 기업
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 (금융기관)	- 협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
우수제품상표화보증 (중소기업은행)	- 창업 후 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자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- 중소기업개발 우수제품상표화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

지역혁신특성화보증 (산업자 원부 주관)	- 지역혁신특성화(RIS)사업 중 「프로젝트사업」의 참여기업으로 확인된 기업
중전기 기술개발자금 (한국전기산업진흥회)	- 벤처기업 -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협력개발자 하는 중소기업 - 중전기기술개발과제를 개발보조 하는 중소기업 등
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(특허청)	-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
○ 자금 자체추진사업 관련 보증

상품	대상기업
창업패키지보증	-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-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
기업인수보증	-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
벤처자기보증	- 벤처기업협회 도덕성평가를 통과하는 데 실패한 벤처기업
기술이전보증	- 기술 경쟁력강화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
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	-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○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○ 기술평가등급이 "BB"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 "B"등급 이상인 기업 ○ 자기자본 전액참여가 아닌 기업
우수기업 평가보증	- 우량기술기업 - 기술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받은 기업 - NT, EM, GR, EEC, IT, KT, 핵심자본재 품목 개발 외 - 벤처기업, INNO-Biz기업
혁신기업 평가보증	- 우량기술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-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- IT, BT, NT, CT, ET, ST 등 미래성장유망산업 영위기업 -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

**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자금조달 지원제도**

**가. 보증연계투자**

□ 사업개요

-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금융 활성화 및 재무건전도 제고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증과 연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기보가 직접 투자하는 제도

□ 투자대상기업

-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유망한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□ 투자절차

- ① 투자신청 ◀ 본부, 영업점, 기술평가센터 등
- ② 투자상담 ◀ 본부, 기술평가센터, 중앙기술평가원
- ③ 예비검토
- ④ 기술평가 ◀ 기술평가센터, 중앙기술평가원
- ⑤ 투자실무위원회 ◀ 중앙기술평가원
- ⑥ 투자심사위원회 ◀ 투자결정

⑦ 투자계약 체결 및 기표 ◀ 중앙기술평가원

⑧ 투자기업 사후관리 ◀ 중앙기술평가원

□ 투자방법

- 주식의 인수 (신주 및 구주, 우선주와 보통주 포함)
-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(분리형 포함)의 인수

□ 투자한도

구분	일반한도	특별한도
같은 기업당 투자한도	10억원	30억원
투자+보증의 통합한도	50억원	70억원
관계기업군 투자한도	30억원	50억원

**나. 기술평가투자보증**

□ 사업개요

- 기금과 협약이 체결된 은행 또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인수하는 우수중소기업 발행 전환사채(CB)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(BW)에 대하여 보증 지원하는 제도

□ 대상기업

- 기술혁신선도형기업, 협약기관 추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

□ 취급절차

- ① 보증상담 및 접수 ◀ 영업점, 기술평가센터
- ② 신용조사 및 보증용기술평가 ◀ 영업점, 기술평가센터
- ③ 보증심사 및 승인 (IPO가능성 전환가점정성 검토) ◀ 영업점, 기술평가센터
- ④ 보증서 발급 ◀ 영업점, 기술평가센터
- ⑤ 사후관리 ◀ 영업점, 기술평가센터

□ 대상채무

- 당기금 과 업무협약체결기관이 인수하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전환사채(CB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 
※업무협약 체결기관 : 산업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전북은행, 기보캐피탈, 산은캐피탈, 아이엠창업투자, 파트너스벤처캐피탈

□ 사채발행조건 등

- 상환기간 : 2년 이상
- 발행금액(방법) : 5천만원 이상(비공모발행-시모발행)
- 사채금리
  - 표면금리 : [3년만기 AAA무보증 회사채(공모) 금리] 이내
  - 만기보장수익률 [3년만기 AAA무보증 회사채(공모) 금리 + Spread(3.0%)] 이내

## 기술보증제도 개편 내용

### 가. 중복보증 해소와 전문영역 구축

- 벤처기업 또는 Inno-Biz기업은 기보가 전담
  - 일반보증(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)은 신보가 전담
  -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(벤처기업, Inno-Biz기업 제외)에 대해서는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

※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기술사업자는 양기관 모두 보증취급 가능

### 나. 창업·기술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우대지원

- 기술평가보증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보증은 부분보증비율 우대(85% 고정비를 적용) 및 보증료를 감면(최대 -0.3%)

#### ◆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 유형

-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(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NT·EM·IT·KT·GD마크 보유기업 등)
-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(디지털 TV/방송, 디스플레이, 지능형 로봇, 미래형자동차, 차세대반도체 등)
- 미래 성장유망산업(6T) 영위기업(정보기술T, 생명기술BT, 나노기술NT, 문화기술CT, 환경기술ET, 항공우주기술ST)
-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(연구 및 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, 전문디자인업 등)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[기술집약적산업의 범위]에 속하는 사업영위 기업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% 이상인 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- 부품소재 전문기업

### 다. 고액·우량·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

- 보증금액 15억원 초과 기업
  - 이용규모에 따라 보증료를 가산
    - 2006년 : 보증금액에 불문하고 0.1% 가산
    - 2007년 이후 : 보증금액별로 차등 가산하고, 가산율도 연차적으로 상향
- 우량중견기업
  - 부분보증비율이 75%에 도달할 때까지 기한도래 시마다 5%p 부분보증비를 인하, 인하 불가 시 보증료를 가산(+0.2%)
- ※ 우량중견기업 :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300억원이상이고, 최종신용등급이 'A등급 이상'인 기업

- 10년(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은 12년) 초과 장기이용기업
  - 부분보증비율을 5%p 인하
- 5년 초과 보증거래기업으로서 운전자금보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-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보증료를 0.1% 가산
  - ※ 상기의 보증금액 및 보증이용기간은 신보의 보증금액 및 거래기간 합산

### 다. 보증료를 산출체계 변경

- 우선 기업의 신용등급(또는 기술평가등급)에 따라 보증금액에 대하여 최저 0.7%에서 최고 2.5%(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3.0%) 이내로 보증료를 결정

- 위에서 결정된 보증료율에서 우리기금이 중점지원하는 벤처기업 및 Inno-Biz기업에 대해서는 0.2%, 기술평가보증에 대해서는 0.1%~0.3% 등 보증료율을 감면. 다만, 감면기한은 보증기한까지만 적용(보증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년까지만 적용)

### 라. 부분보증비율의 산출체계 변경

- 부분보증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
  - 우선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50%에서 최고 90% 이내로 부분보증비율이 결정
  - 위에서 결정된 부분보증비율에서 만기 3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5%p 가산하고, 10년(기술혁신선도형기업 12년) 초과 이용기업 등에 대한 보증은 5%p 인하
  - 최종 산출된 최종부분보증비율의 수율이 곤란하여 5%p 상향 시에는 보증료를 0.2% 가산
  - 한편, 기술보증기금이 중점지원하는 기술평가보증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85%의 고정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여 우대

※ 2005년 말까지 이미 취급된 보증 중 부분보증비율이 80%를 초과하는 보증은 기한도래 시 부분보증비율을 5%p 인하하고, 인하불가 시에는 보증료를 0.2% 가산. 기술평가보증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 혁신선도형기업은 부분보증비율 인하대상에서 제외

#### ※ 벤처기업 우대지원

- 보증한도 확대(보증한도 50억원 - 일반기업 30억)
- 보증료 감면(0.2% 감면)
- 85% 고정부분보증비율 적용일반기업은 등급에 따른 50~90% 차등 적용
- 영업점장 전결권 확대(최대 30억)